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특허청 인력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1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 14명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자치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11. 00. ~ 12.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1,405”를 “1,39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399”를 “1,3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397”을 “1,384”로 하고, 행정사무관 “176”을 “172”로, 공업사무관 “118”을 “116”으로 하며, 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를 삭제하고,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을 삭제하며,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2”를 삭제하고, 공업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을 삭제하며, 사무운영서기보 “38”을 “3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405”를 “1,392”로 하고,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1,399”를 “1,386”으로 하며, 일반직 계 “1,397”을 “1,384”로 하고, 행정사무관 “123”을 “119”로, 공업사무관 “103”을 “101”로,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를 “7”로,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4”를 “83”으로,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 “24”를 “23”으로, 공업

사무관·농업사무관·수의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41”을 “40”으로, 행정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보건주사보·약무주사보·환경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를 “4”로, 사무운영서기보 “38”을 “37”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5”를 각각 “14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2”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45”를 각각 “144”로 하고,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약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3”을 “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 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시행에 따른 초과현원으로서 이 규칙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14명(5급 1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은 그 초과된 현원이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405</u>	<u>1,392</u>	-1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1,399</u>	<u>1,386</u>	-13
·	·	·	
·	·	·	
일반직 계	<u>1,397</u>	<u>1,384</u>	-13
·	·	·	
·	·	·	
행정사무관	<u>176</u>	<u>172</u>	-4
·	·	·	
·	·	·	
공업사무관	<u>118</u>	<u>116</u>	-2
·	·	·	
·	·	·	
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2</u>	<u><삭 제></u>	-2
·	·	·	
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u>1</u>	<u><삭 제></u>	-1
·	·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임업 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 건사무관 · 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 .	<u>2</u> . .	<u><삭 제></u> . .	-2
공업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 .	<u>1</u> . .	<u><삭 제></u> . .	-1
사무운영서기보 . .	<u>38</u> . .	<u>37</u> . .	-1

[별표 2]

특허청 공무원 정원표(제19조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405</u>	<u>1,392</u>	-1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u>1,399</u>	<u>1,386</u>	-13
·	·	·	
·	·	·	
일반직 계	<u>1,397</u>	<u>1,384</u>	-13
·	·	·	
·	·	·	
행정사무관	<u>123</u>	<u>119</u>	-4
·	·	·	
·	·	·	
공업사무관	<u>103</u>	<u>101</u>	-2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9</u>	<u>7</u>	-2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약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84</u>	<u>83</u>	-1
·	·	·	
·	·	·	
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 또는 해양수산사무관	<u>24</u>	<u>23</u>	-1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수의 사무관 · 보건사무관 · 의료기 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u>41</u>	<u>40</u>	-1
·	·	·	
·	·	·	
행정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 주사보 · 농업주사보 · 보건주 사보 · 약무주사보 · 환경주사 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19</u>	<u>18</u>	-1
·	·	·	
·	·	·	
사무운영서기보	<u>38</u>	<u>37</u>	-1
·	·	·	
·	·	·	

[별표 3]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45</u>	<u>144</u>	-1
일반직 계	<u>145</u>	<u>144</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 ·약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3</u>	<u>2</u>	-1
·	·	·	
·	·	·	

[별표 4]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145</u>	<u>144</u>	-1
일반직 계	<u>145</u>	<u>144</u>	-1
·	·	·	
·	·	·	
행정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 ·약무주사·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u>3</u>	<u>2</u>	-1
·	·	·	
·	·	·	